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년 06월 25일 (목요일) 오전 10시 00분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3길 20,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 14층 킹스홀
3. 회의 목적 사항

   가. 보고사항

   - 감사보고
   - 영업보고
   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   - 지정감사인 선임 보고
   -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

   나. 부의안건

   - 제1호 의안: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   - 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  - 제3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  - 제4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의 비치

  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   이번 주주총회에는 주주님께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하기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당사는「상법」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
나. 전자투표 행사・전자위임장 수여기간: 2026년 06월 15일 ~ 2026년 06월 24일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. 단,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라.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사항

가. 직접행사: 신분증

나. 대리행사

- 개인주주: 위임장(개인인감 날인), 개인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- 법인주주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대리인 신분증

8. 기타사항

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의 소유 주주에 대한 통지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.

※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6년 06월 10일

이 지 케 어 텍 주 식 회 사

대표이사 홍 우 선 (직인생략)

<정관 신구조문 대비표>

변경 전	변경 후	변경의 목적
제13조(주식의 소각)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	제13조(주식의 소각 등)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및 보유·처분은 상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

변경 전	변경 후	변경의 목적
제36조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	제36조(이사의 의무)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④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	표준 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